

「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이정희·정지원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정도, 박세채
장세구 의원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산, 조산 등 임신 관련 건강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밀한 산전 진료와 검사가 요구되고 있어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하며,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 및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관련 사업은 운영 실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: 모자·부자보건사업(안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, 제11조
- 「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○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임신부 정신건강 지원 및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 명칭을 정비하고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른 임신 합병증 위험을 완화하고자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·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¹⁾)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임신군인 35세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제5조(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)

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<신설 2025. 7. 14.>

- 다만, 출산장려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원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정책의 본래 취지(고위험 산모 지원)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, 경상북도 조례와의 일관성 확보 및 고위험 산모 지원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가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복지 혜택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 체계 구축, 성과평가 지표 마련, 주민 홍보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35세 이하 고위험 임신질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한정된 현행 지원 체계로 인해 외래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향후 35세 이하 고위험 임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